

# 교회법

한국교회법연구소  
THE KOREAN INSTITUTE OF CHURCH LAW

통권 제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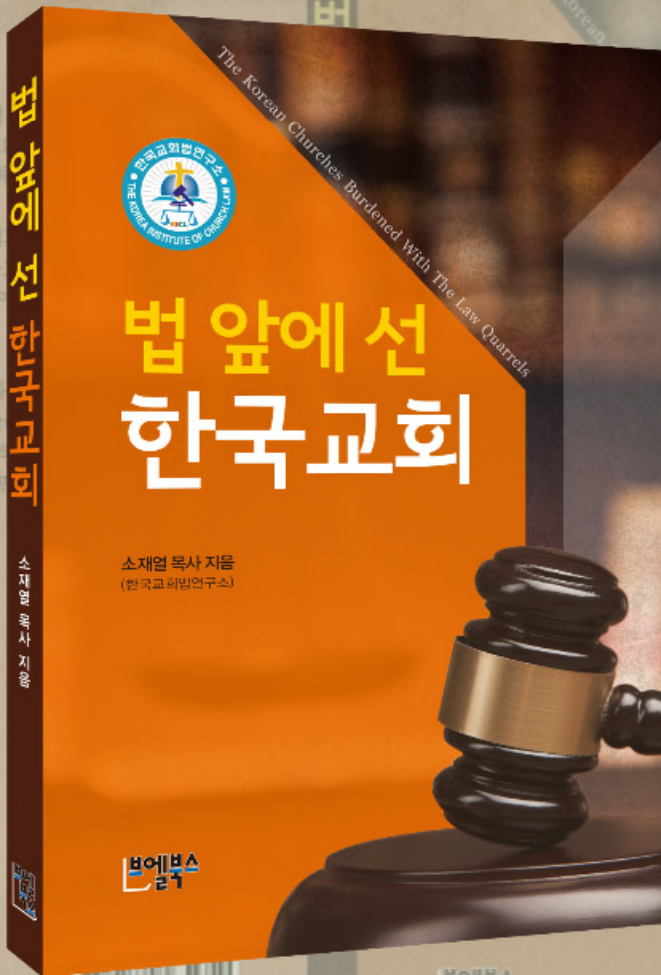
학술논문 / 법간

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031) 984-9134

교회법이란 하나님의 특별제시인 성  
조칙과 구성원들의 생활 규범을 법제  
법은 악한 것이 아니며, 악하게 이용하

교회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국가법  
하는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교회라  
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  
있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주님은 무제한과 무절제의 자  
이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한 어떤 울타  
라고 했다. 교회법은 인간의 본능에  
막아주는 수단으로 선하게 사용한다  
만 온증이 할 수 있다.



## 법앞에선 한국교회

소재업 목사 지음  
(한국교회법연구소)

비에바스  
출판

9 791190 336062  
ISBN 979-11-90336-06-2

값 13,000원

비에바스  
출판



월간

**교회법**

통권 23호

발행인 : 소재열

발행처 : 한국교회법연구소

등록 : 김포,라00029

인쇄인 : 한명훈

발행일 : 2023. 7. 1.

주소 : 김포시 태장로 780

베네치아아침오피스텔 1208호

전화 : (03) 984-9134



- 일제 말 일본화 종교정책에 말려든 교파 통합(정체성 훼손)
- 조직교회-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권 자동 부여 법리
- 교단탈퇴, 정관변경 정족수 규장 충돌 시 교단탈퇴 정족수 적용-광주시민교회 중심으로-
- 신간 :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 개혁의 원리와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 계시로 적용되는지를 성령의 역사로 인지하고 믿어야 한다. 오늘날 이신칭의 교리를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인식하면서 여전히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에 맞은 경우들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공로주의를 회개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부정한다. 이를 근거로 한 신약성경을 부정하며 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이란 용어 자체를 부정한다.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분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구약성경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이라 한다. 히브리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본다.

유대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며, 삼위일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한다. 우리 그리스도인(기독교)이 바라보는 구약성경과 유대인이 바라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내용은 같으나 그 해석은 전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신지식에 의해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때 교회는 침체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일제 말 일본화 종교정책에 말려든 교파 통합

종교단체법(1939년)에서 일본기독교조선교단(1945년)에 이르기까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 1. 서론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1938년)에서 일제의 압력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일제는 조선 교회를 비롯한 종교를 장악할 목적으로 1915년 8월 16일 「포교규칙」(布教規則)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이 포교 규칙은 종교적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규칙은 조선의 각종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기독교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선의 종교를 일본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독교가 가진 정신을 막고 '일본화와 관리·통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이어서 1939년에 이르러 「종교단체법」을 제정 공포하여 면세(免稅)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법인화를 강제화하면서 주무대신(主務大臣; 문부대신)이나 지방 장관이 종교법인을 인가 취소권을 주어 해산 조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교단(기독교)의 설립자가 각각 교규·통제·교단규칙(教規·宗制·教團規則)을 제정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여 종교단체 내규와 함께 교리까지 국가가 통제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종교단체들의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종교

단체법」에 의해 일본기독교는 '일본기독교단'으로 통폐합되어 인가를 받았다. 일본 문부대신은 이를 조선총독부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조선 종교를 위한 지침을 하달하였다.<sup>1)</sup> 종교단체법에 따라 일본기독교단은 일본의 주무대신에 의해 종교의식과 집행에 관한 모든 종교행사를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성직자들의 해직, 종교단체의 해체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게 되었다.

이어 1943년에는 조선에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과 1945년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기독교 모든 종파를 통폐합하여 일제는 한국의 모든 교회를 통제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외형이든, 내형이든 교단 없는 단일교단 교회로 인한 연합정신을 위한 교파 연합이라는 주장은 일본의 앞잡이에 선 자들의 망언일 뿐이다. 이는 일제가 포교규칙(1915년), 종교단체법(1939년), 이에 근거한 「일본기독교단」(1941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폐쇄(1943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1943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1945년) 등은 일제가 한국의 모든 교회를 통폐

1) 소화 16년(1941년) 12월 8일(총독부 접수 12월 10일 총독부 접수)

합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들의 의도에 따라 장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sup>2)</sup>

일제의 한국기독교 정책이 적극적인 ‘일본화’, ‘선교사 추방’의 모형을 띠는 시기로, 곧 ‘일본기독교조선’의 성립의 상황적 배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sup>3)</sup> 이를 조선의 교회가 교파 없는 단일교단을 위한 성경적 연합정신이라고 한다면 이는 망언일 수밖에 없다. 서정민은 이를 “외형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염원하던 한국에서의 ‘교파 구별 없는 단일교회’ 설립의 이상을 마침내 실현한 교파적 정체성의 차별도 없이 부단히 나뉘어 구획되던 일종의 폐해를 극복하고, 하나의 교회를 구축하였다는 성과를 논할 수 있다”라고 했다.<sup>4)</sup>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평가일 뿐, 일제 말기의 교단 통폐합은 교회와 장로회 정체성을 파괴한 일제의 의도에 따른 기독교의 파괴행위였던 것이지 단일교회의 감격스러운 연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일본의 종교정책에 의한 조선교회 지도자들의 ‘변질’, 내지 ‘변절’ 임에 틀림없다. 이를 ‘합동 운동’이라고 주장한 자들은 그 시대

2) 서정민은 일제하의 한국기독교사의 전체적인 구도와 시기를 3기로 구분한다(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통권 제16호, 76). 제1기는 “선교사와 일제 제휴, 한국기독교 배타 시기(1905-1919), 제2시는 선교사와 한국기독교 제휴, 일제 배타 시기(1919-1938), 제3기는 일제와 한국기독교 제휴, 선교사 배타 시기(1938-1945)로의 구분을 인용한다(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 신앙 운동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 pp.145~14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pp. 300~513 참조; 서정민, 〈한국교회사강의록〉, 연세대학교, 2001.)

3)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79.

4)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71.

통폐합으로 어떻게 성경적 기독교 정신이 어떻게 왜곡 훼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장로교회가 1940년 9월 제29회 총회에서 중앙상치위원회를 설치한 후 11월에 조선총독부에 협력할 내용 및 일본 기독교와 제휴해 “신동아건설에 즉응하는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에 매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발표한 사실에서 이를 극명하게 드러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당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장로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과 장로회 교리, 정체, 직제가 어떻게 파괴되어 일본화된 교회로 장악했는지를 살펴서 오늘의 교회 현실을 반성하며 현재와 미래의 교회 정체성이 무엇이며, 이를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2. 「한일병합조약」과 기독교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38년 제27회 총회 이후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총회가 공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의 죄를 범했다. 신사참배는 자의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을 강제하여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기독교 관련 정책 수행의 방식은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선교사들이 정치적 영역에 대해 방관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었다.<sup>5)</sup> 이런 이유로 선교사들은 「한일병합조약」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대체로 침

5)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1), 177-78.



목 또는 묵인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장을 언더우드 선교사로 선출했다. 언더우드 선교사로 하여금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좋은 관계는 1920년대까지 이어졌다. 1930년대에 들어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의 전시체제 속에서 선교사들 일부는 신사참배와 관련된 신앙상의 문제로 조선총독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40년대에 일본과 자국의 관계에 따라 적국(敵國)으로 분류된 국가의 선교사들은 대다수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귀환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기독교의 보호 관리 및 확산과 조선 기독교의 친일화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동화정책’이었다. 이는 조선인을 일본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총독은 천황에 직속하여 육·해군을 통솔하고, 입법·사법·행정 일체의 권력을 한 선에 쥔 전제군주였다. 1919까지 10년간 “무단정치”를 통해 헌병 경찰제도를 통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여, 민족의식, 언어, 문화를 빼앗아 “조선 민중은 모두 제국 신민이 되어 천황 폐하의 무육(撫育)의 화(化)를 입게” 하려고 하였다.<sup>6)</sup> 초대 총독 육군대장 테라우찌(寺內正毅)는 유고(諭告)중에서 신교(信敎)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신교의 자유는 문명 열국이 다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요, 각인이 그 숭배하는 교지에 의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본령이라 하더라도 종파의 이동(異同)으로써 부질없이 분쟁을 시도하고 또는 명분을 신교에 빙자하여 외람되게 정사를 논하고 혹은 달리 계획을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은, 곧 양속(良俗) 다독(荼毒)하여 안녕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땅히 법을 만들어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유·불 제교와 기독교를 불문하고 그의 본뜻은 필경 인심과 세태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시정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돕는 것이 됨을 의심치 않는다. 이로써 각종의 종교를 대우함에 털끝만치도 친소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은 물론 그 포교 전도에 대하여는 적당한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sup>7)</sup>

미국 선교사에 대해 교회는 “이름을 신교에 빙자하여 외람되게 정사를 꾀하고 혹은 이도(異圖)를 기획한다”라고 하면서 경계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당시 조선기독교회는 20만 신도, 800 이상의 학교, 3만 명을 넘는 학생신도, 900여 개의 교회 집회소가 전국에 있고, 리더(지도자)로서 외국인 선교사 270여 명, 조선인 교직 2,300여 명,<sup>8)</sup> 기타 병원, 고아원 등 다수를 포함한 강대한 조직이었다. 신앙이라는 견고한 유대로 결합되어 전국 구석구석까지 교회라는 공인된 집회 장소를 갖고, 구미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계 세론(世論)과 이어지고 있었다. 단순한 종교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박해를 들어 부녀자를 해방시키고 미신을 타파하며 병원과 학교를 세워 교과서를 만들

6)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김승태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0), 77.

7) 조선총독부, 「조선의 보호 및 병합」, 1917, 338.,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김승태 역 (기독교문사, 1990), 77.에서 재인용.

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명치 43년), 1912. 668-69., 한국학부, 「한국교육의 상황」, 1910, 124-25.,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79.

고 국문을 보급하며 새로운 음악과 스포츠 등을 전하는 등 때로는 교육과 문화계몽을, 때로는 산업과 위생까지도 지도하는 사회개혁의 중심이 되고, 더욱이 개인의 권리, 재산의 보호, 방위에 힘써서 현세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시대에 밀착한 활동을 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해 국권, 민권의 회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아 “조선 국기인 태극기가 더욱 나부끼고 있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집”이라고 하여 교회에는 민족적 색채가 농후했다. 1907년의 대 부흥으로 매일 저녁 뜨거운 기도가 전국을 휩싸고, 더욱이 「한일」 직후부터 이듬해에 걸쳐 “조선에 백만인 교도가 있으면 조선은 독립한다.”<sup>9)</sup>를 암묵적인 슬로건으로 한 백만 구령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눈에 비친 조선 교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운동으로 보였으며 강력하게 대책의 실시를 통감하게 되었다. 일제 천황제 정부는 일본과 조선에서 기독교를 그 이데올로기의 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 대책으로 회유와 탄압이었다. 대신 외국인 선교사를 우대, 회유하여 대의 선전에 이용했다. 미국 북 장로회 해외선교위원회 총무인 브라운(A. J. Brown)은 “일본 통치는 조산이 다른 나라에 통치되는 것보다 훨씬 좋으며, 또한 조선이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했다.<sup>10)</sup> 의병장 중에는 상당수 기독교인으로 인해 기독교회는 위험한 반일 저항의 소굴로 적대시되기 시작하였다.

9) 일본 大藏省 관리국,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 통권 제4책 조선 편 제3분책, 1947년, 74.,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81.

10) 강위조, <일본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1977년, 28.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기독교 관련 법규로 1915년 8월의 「포교규칙」으로 조선의 기독교를 ‘일본화와 관리·통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sup>11)</sup> 조선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러 외교 관계를 고려해 관리 대상으로 삼다가, 중일전쟁 이후 해산을 종용하거나 일본 기독교와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종교단체법」(1938년), 「일본기독교단」(1941)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1953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1945년)으로 발전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 기독교의 무력화와 종속화’에 있었다.<sup>12)</sup>

일제는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포교 행위를 공인 및 종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1915년 8월 16일 「포교규칙」(布教規則)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규칙은 조선의 각종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이 포교 규칙은 부칙 4조를 포함하여 19개 조로 구성되었다. 이 규칙에서 종교를 신도(神道), 불교, 그리스도교로 제한하였다. 세 종교 이외에 ‘유사종교’ 혹은 ‘비종교’로 분류하여 종교영역에서 배제했다. 이로

11) 「포교규칙」 외에 조선의 기독교와 간접적 영향을 미친 일반 법규는 종교 법규보다 종류가 다양했다. 주요 법규로는 「보안법」(1907), 「사립학교령」(1908), 「집회 취체령(取締令)」(1910), 「범죄즉결례(犯罪即決例)」(1910), 「범죄즉결례시행수속」(1910), 「조선교육령」(1911, 1922, 1938, 1943), 「사립학교규칙」(1911), 「보통학교규칙」(1911), 「경찰범처벌규칙」(1912), 「조선민사령」(1912), 「조선형사령」(1912),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 건」(1919), 「치안유지를 위한 죄칙(罪則)에 관한 건」(1923), 「치안유지법」(1925), 「국가총동원 준비 건」(1937), 「국가총동원법을 조선, 대만과 사할린(臺)에 시행하는 건」(1938), 「조선인 씨명(名)에 관한 건」(1940), 「국방보안법」(1941), 「국방보안법 시행령」(1941) 등을 들 수 있다.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23.

12)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178-79.

인해 대종교나 천도교 등은 「보안법」과 「집회 취체에 관한 건」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었다. 기독교는 이 「포교규칙」에 의해 총독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았다. 포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격 조건을 내세워 그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하였다. 특히 포교 방법까지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종교 간섭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 포교에 종사하는 자, 거주지 이전 또는 포교의 폐지 등을 총독에게 신고해야 했다. 그리고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를 설립할 때는 설립 이유, 명칭과 소재지, 부지 면적과 건물의 평수, 설립비, 관리와 유지 방법 등을 구비하여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매년 교회별 신자의 증감 수도 신고해야 했다. 「포교규칙」에 따르면, 포교 관리자는 매년 소속 포교자 명부, 교회별 신자의 증감 수를 총독에게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포교규칙」은 다음과 같다.

### 포교규칙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1조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및 기독교를 위함.

제2조: 종교 선포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포교자가 될 자격을 증명할 문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 단 포교 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 또는 조선 사찰에 속한 자에게는 제2호의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의의 요령
3. 포교의 방법

전항 각호에 든 사항을 변경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內地)의 불교 각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은 포교 관리자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2. 교규(教規) 또는 종제(宗制)
3. 포교의 방법
4. 포교 관리자의 권한
5. 포교자 감독의 방법
6. 포교 관리사무소의 위치

7. 포교 관리자의 씨명 및 그 이력서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선 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 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 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제5조: 포교 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포교 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명부에는 포교자의 씨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6조: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 대하여 포교 관리자를 두게 할 수도 있음. 전항에 의하여 포교 관리자를 둘 때는 10일 내로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제7조 전조의 포교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3조 이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의하여 포교 관리자를 둘 때는 제4조, 제5조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8조: 종교 선포에 종사하는 자, 씨명을 변경하며 거주지를 이전하며 또는 포교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종교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의 유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
2. 명칭 및 소재지
3. 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의 씨명 및 도면
4.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5. 포교 담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
6. 설립비 및 그 지변(支辯) 방법
7. 관리 및 유지방법

전항 5호에 의하여 포교 담임자를 선정할 때는 설립자 또는 포교 관리자는 그 씨명 및 거주지를 구비하고 이력서를 첨부하여 10일 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0조: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종교의 용도에 쓰코자 하는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의 류(類)를 폐지할 때는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포교 관리자 및 조선 사찰의 본사주지는 각 그 소속 사원, 교회당, 설교소 또는 강의소별로 매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신도 수 및 그 해에 신도의 증감수를 익년 1월 31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지 않은교파, 종파 및 조선의 사찰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당, 설교소 또한 강의소

에서는 각 그 포교 담임자로부터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에 속한 자 또는 조선의 사찰에 속한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며,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서(副署)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에 위반한 자는 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料料)에 처한다.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와 유사한 단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공고한다.

#### 부칙

제16조: 본령은 대정 4년(1915)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17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8조: 명치 39년(1906) 통감부령 제45호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2조에 신고를 하며, 또는 제3조의 인가 혹은 제9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단 본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사항, 본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사항 및 포교 담임자의 씨명 및 이력을 구비하여 본령 시행일부터 3월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 본령 시행에 제(際)하여 현재 종교선포에 종사하며 포교관리자를 두며 또는 종교의 용도에 쓰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의 유를 관리하는 자로서 전조에 해당치



아니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3월 내로 제2조 제3조 또는 제9조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제9조의 사항을 신고하는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1938년 이후 일제는 더욱 교회를 압박하고 탄압하였다. 교회와 총회는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박예배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1938년 9월 9일)에서 전국의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가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총회 개최 직전에 경찰은 선교사들에 대하여, 총회에서 조선인 대표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국적을 달리하는 선교사 측의 저지 행동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반대 저지 행동을 할 경우는 불경죄로서 취체할(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13)</sup> 또 각지의 총대 대표들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동의를 하든가 신사 문제 상정 시에는 침묵을 지키든가 그 어느 쪽도 반대한다면 총대를 사퇴하라고 하라는 등 셋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였다. 수백 명의 사복 경찰관이 포위하여, 강단 전면에는 평안남도 경찰부장 등 간부들 수십 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총대를 끼고 좌우에 경관이 배치되었으며, 좌우, 후방에는 무장 경관이 에워싸고 있었다. 주기철 · 이기선 · 김선두 등 강경히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사전에 구금되어 한 사람도 출석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전날 평양경찰서에서 협의한 대로 평양 · 평서 · 안주 3노회 대표 박응준

에 의하여 신사참배 결의와 성명서 발표의 긴급 제안이 나와 반대 의견은 무시되고 반대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강행, 가결시켰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sup>14)</sup>를 발표하고, 총회 폐회 후 부회장이 임원을 대표하고 각 노회장이 총대를 대표하여 평양 신사에 참배하였다.

일제는 1938년 9월에 개최될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획책하면서 이미 3월에 「종교단체법」을 공포하였다(시행 1940.4). 이 법에 의하면 각 도시에 한 교회만 존립을 허가하고 다른 곳은 폐쇄하는 등 교회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했다.

### 3. 일본의 「종교단체법」(1939년)

일제는 종교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전술한 대로 각종 법령을 제정하였다. 특히 1899년(명치32) 12월의 제14회 제국의회에서 총 53조의 ‘종교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어 1927년(소화2) 1월 제52회 제국의회에 총 103조의 ‘종교법안’, 1929년(소화4) 2월의 제56회 제국의회에 총 99조의 ‘종교단체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어 폐지되었다.<sup>15)</sup> 그러다가 히라누마 내각이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전시체제 상황에서 1939년 1월에 제4회 제국의회에 제출

14) 성명서 : 아등(我等)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本意)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勵行)하고 추(追)히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後) 황국신민으로써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期)함.

우(右) 성명함. 소화13(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장 홍택기(洪澤麒)

15) 宗教制度研究会 編, 宗教制度研究会 編, 1934, 『宗教法案資料』, 東京: 宗教制度研究会, 1-198.,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74.에서 재인용.

13)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172-73.

한 총 37조의 종교단체법안이 귀족원(2월 18일)과 중의원(3월 23일)을 통과해 4월 8일에 법률 제77호로 공포되면서, 1940년(소화 15) 4월부터 「종교단체법」이 시행되었다.<sup>16)</sup>

「종교단체법」은 각 장의 구별없이 본문 28개 조와 부칙(제29조-제37조)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은 종교단체 범위와 법인(제1조-제2조), 종교단체 설립 관련 내용(제3조-제12조), 종교단체 등기 관련 내용(제13조-제15조), 종교단체와 교사에 대한 규제·감독 관련 내용(제16조-제20조), 세금 특혜 부분(제21조-제22조), 종교결사 관련 내용(제23조~제25조), 벌칙 관련 내용(제26조-제28조)으로 구성되었다.<sup>17)</sup>

이 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파·종파·교단 및 교회를 법인(法人)으로 ‘할 수 있게’ 하여(제2조) 법인화를 유도하였다. 법인화 유도책은 특히 ‘소득세·법인세·지조(地租; 토지세)·지방세 면제(제22조)였지만, 법인화를 유도하면서도 주무대신(主務大臣; 문부대신)이나 지방장관에게 인가 취소권을 주어 해산 조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교파(신도)·종파(불교)·교단(기독교)의 설립자가 각각 교규·종제·교단규칙(教規·宗制·教團規則)을 갖추어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게 만들어(제3조) 종교단체 내규와 함께 교리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sup>18)</sup>

또한 「종교단체법」에서는 “교파(신도)·종파(불교)·교단(기독교)이 주무대신 인가를 받아 합병이나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해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제5조) 당시의 종교단체간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실제로 「종교단체법」의 적용 과정에서 교파 신도 13개 파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가했지만,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 통합이 바로 후술하는 것과 같이 1941년에 창립된 ‘일본기독교단’은 일본에 의해 인가를 받았다. 이제 종교단체는 인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했다.

종교단체법 제16조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교사가 행하는 종교의 교의 선포 혹은 의식의 집행 또는 종교상의 행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될 때 주무대신은 그것을 제한, 금지하고 교사의 의무를 정지하고 혹은 종교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규정은 주무대신에게 종교의식과 집행에 관한 모든 종교행사를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성직자들의 해직, 종교단체의 해체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7조, “종교단체 및 그 기관직을 맡은 자가 법령 또는 교칙, 종교제도, 교단규칙, 사원규칙, 혹은 교회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대신은 그 직무를 취소,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의 직무를 다른

16) 「宗教団體法」(法律 第77号, 昭和14年4月7日), 『官報』, 1939年 4月 8日; 「宗教団體法 施行期日」(勅令 第855号, 昭和14.12.22), 「宗教団體法 施行令」(勅令 第856号, 昭和 14.12.22), 『官報』, 1939年 12月23日; 「宗教団體法 施行規則」(省令 文部省 第1号, 昭和 15.1.10), 『官報』, 1940年 1月 10日; 「宗教団體法」 同法施行令及同法施行規則施行 二閣之取扱方/件(訓令 文部省 第4号, 昭和15.3.8), 『官報』, 1940年 3月 8日, 「종교단 체법」의 시행일은 소화 15년 4월 1일이다(칙령 제855호),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74. 주111)에서 재인용.

17) 「宗教団體法」(法律 第77号, 昭和14.4.7), 『官報』, 1939年 4月8日.,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76.

18)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76.

사람에게 이임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했다. 종교단체의 각 기관직에 대한 해임, 선임의 권한이 주무대신에게 주어진다. 각 종교단체 안에서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직자들을 색출하고 해임하겠다는 법을 만든 것이다.

1939년 4월 8일에 공포된 「종교단체법」에 의해 일제는 식민화했던 조선에도 적용하여 종교를 통폐합하여 장악하여 통제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더욱 강요했다.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1938)를 장악하여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했다. 이는 총회의 자의적인 결정이기보다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1939년에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公議會)가 자신해서 해산토록 했다. ‘내선일체’<sup>19)</sup>를 표방한 조선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조선총독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38년 5월에 일본과 조선의 교회 목사들과 신자들이 조선기독교연합회를 발족했다. 이 협회는 “일본 정신의 선양과 내선일체와 종교보국”을 표방하며 전국을 30구로 구분해 30개의 지회를 두어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기독교와 조선의 기독교가 각 지회를 결성하여 조선총독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9회 총회(1940년)는 이 연합회에 참가를 결정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 아래에서 1940년대 전후 조선 개신교계의 교파 합동 및 일본 개신교계와의 합동 움직임은 일본 내 개신교계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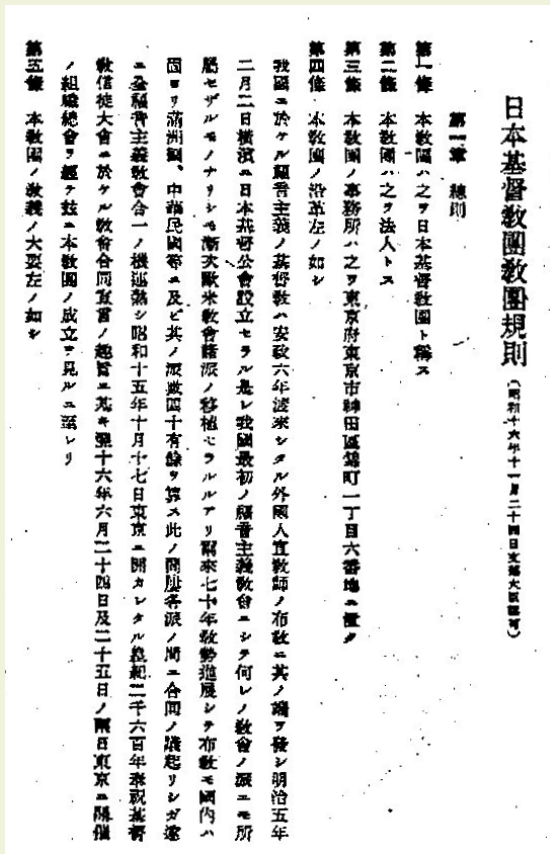
동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었고, 조선총독부의 방향이기도 했다.<sup>20)</sup> 일제는 1939년 3월에 제정된 「종교단체법」(시행 1940.4)이 일본 기독교 계에 지형은 개신교계 교파들을 통폐합해 초교파적 연합교회 성격을 지닌 하나의 단체로 전환시켰다.

#### 4. 일본기독교단(1941년)

1941년 6월 당시 일본기독교 출판사업 시찰을 명분으로 일본을 방문한 양주삼(전 감리교회 총리사)은 일본기독교단의 창립총회에 대해 “세계기독교 사상에 미증유(未曾有)의 획기적 일대 변혁으로서 이 광휘(光輝) 있는 기독교의 신체제의 수립은 바야흐로 세계 기독교계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다른 하나는 1940년대에 일본의 외국 선교사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39년 9월 독일 폭격기들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급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이 일어나자 선교사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 들어와 영·미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들의 지지가 없어도 식민지배의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그 선교사들이 식민통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일제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분열 정책과 탄압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특히 일제는 신사참배 문제를 종교탄압의 구실로 삼아 신사참배 반대의 책임을 선교사들에게 돌리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일제의 새로운 기독교 정책은 한국 선교사들과 일차적으로 강력한 갈등상태를 보였고, 일제는 선교사 배

19) 내선일체(內鮮一體)는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통치하기 위해 내놓은 민족말살정책 중 하나이자 일제강점기의 표어이다. 자매품으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가 있다. “내지(內地: 일본 열도와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이다.

20)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185.



일본기독교단 규칙(1941)

제·검속·추방을 시행했다. 특히 당시 영·미와의 관계 악화, 전쟁상황을 이유로, 이들 선교사에게 ‘스파이 혐의’라는 세속적 죄목을 씌웠다. 이와 함께 일제에 순응하는 한국 다수교회와 기독교인들과는, ‘일본적 기독교’, ‘종교보국’의 목표를 세워, 제후, 병진하였다.<sup>21)</sup>

1940년 9월 27일에 ‘독·이·일 삼국동맹’이 체결되어 영국·프랑스 등과 대치 구도가 형성되고, 일본이 미국에 전의(戰意)를 표명하자 미국 국무부가 1940년 10월에 미국 총영사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조선 철수 명령을 통보해 동

21)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2) 통권 제16호, 78.

년 11월에 미국인 219명이 인천항의 해군함정 마리포사(Mariposa)호를 타고 철수하였다. 이어,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등 외국 선교사들도 1941년 3월 말까지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남아 있던 선교사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포로’ 취급을 받아 일본인 포로와 교환 대상이 되었다.<sup>22)</sup>

일제는 1941년 7월에 「외국인 관계 취인취체 규칙」을 시행하면서 외국 선교사에 대해 통제를 강화했다. 외국의 국민과 법인은 ‘조선총독부 허가’를 받아야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재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적산관리법(敵産管理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1941년 12월 24일 자로 「적산관리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적국으로 공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적산관리법에 따라 1941년 12월 29일 자로 미국과 영국을 적국(敵國)으로 고시하고, 1942년 1월 23일 자에 네덜란드(和蘭國)를 추가 고시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해 1942년 5월 22일에 총 16개 법인(미국계 12개, 영국계 4개)에 「적산관리법」을 적용해 관리인을 지정하였다.<sup>23)</sup>

22)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186-187., H.A Rhodes, A Co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18., 김윤홍, 『일제의 종교 정책과 한국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영성네트워크, 1919), 108-109.

23) 「米英宗敎法人에産管理令」『매일신보』, 1942년 5월 24일, 이 기사에 따르면, 16개 적산 관리 대상 공익 법인의 범위를 보면, 미국계의 경우에는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유지재단, 남감리교회조선부인선교부유지재단, 북국(北)야소교 북장로파조선선교회유지재단, 경성외국인학교유지재단, 피어선기념성경학원유지재단, 조선기독교청년회 국제위원장사유지재단, 야소교 동양선교회유지재단, 제일일본프레스비테리안선교사사단, 재일본 콩그게-손넬 선교사사단, 화국(和國)야소



장로교는 1940년 9월 제29회 총회에서 중앙상치위원회를 설치한 후 11월에 조선총독부에 협력할 내용 및 일본 기독교와 제휴해 “신동아 건설에 즉응[바로 응하는]하는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에 매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41년에는 8월에 ‘일본적 기독교 건설, 구미 의존 구태 잔영(공제)’ 등이 담긴 「전시체제실천성명서(時休制美聲明書)」를 발표해 ‘본적 기독교 건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그 실천’ 돌입했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4월부터 「치안유지법」 등을 적용해 일본적 기독교화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차단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 4월 이래, 평북, 평남, 경남 각 도에서 조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검거했고, 1940년 9월 20일경에도 각 도에 일제 검거를 단행해 193명을 검거하고 「치안유지법」 등을 적용해 취조하였다.<sup>24)</sup>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교파 합동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배후에서 지휘했다. 이미 일본은 1939년 1월 18일 「종교단체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모든 종교단체가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되고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일본은 신도의 나라로 신도의 길은 절대적이었다. 신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본 국민이란 있을 수 없고, 신도를 거스르고 이에 저촉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신

도를 종교라고 칭하지 않고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일본 고유의 초월적인 것으로 존재로 상정한다.

1939년 4월 종교단체법이 공포되고 1년 후인 1940년 4월 종교단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일본 개신 교파들을 통폐합하여 ‘일본기독교단’을 창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일본기독교단’은 1941년 6월 24일, 나가노현(長野縣) 후지미초(富士見町)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참여한 교파는 34개 교파였다. 「일본기독교단」이 창립 후인 11월(1941년) 「종교단체법」상 종교단체로 인가했다. 일본 정부는 1942년 11월에 문부성 내 종교국을 교회국으로 재편하였다. 1943년 1월에는 일본기독교단 가입을 거부하는 성공회에 해산을 통보하기도 했다. 1943년 11월에는 문부성 내 교회국을 교학국으로 재편하였다.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받은 일본기독교단은 교단 창립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교단규칙(日本基督教團教團規則)」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 생활강령인 제7조1항에 의하면 “황국(皇國)의 도(道)를 따라 신앙을 철저히 하고, 황운(皇運)을 보필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황국의 도를 따르고 황운을 보필하는 것이 일본기독교단 생활강령의 첫 번째 항목이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규칙에 앞서 국가에의 의무,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시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전시 시기에 ‘종교단체법’을 시행하여 일본기독교계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교 남장로파조선선교회유지재단, 제조선야소교장로파선교회신학교유지재단이다. 영국계의 경우에는 대영(大英)성서공회조선지부유지재단, 조선기독교서회, 호주빅토리아장로파조선선교회유지재단, 조선야소교가내타)연합교회유지재단이다.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188-189. 주)171 참조.

24)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191.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교단규칙’ 안에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강령’ 조항을 제정했다. 전 기독교인들의 생활 통제까지 가능하게 되어 일본기독교단을 합법적 전쟁총후(戰爭銃後)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단체법 등을 제정하면서 종교탄압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일본기독교단을 창설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조선총독부에 지침을 내려 조선 교회의 통폐합을 진행해 갔다. 이러한 일본의 종교정책에 의해 통폐합된 일본기독교단은 1941년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sup>25)</sup>

#### 5. 일제강점기 마지막 제31회 총회(1942년)<sup>26)</sup>

1942년 10월 제31회 총회에서 총회장(김용순 목사)이 ‘기독교의 일본화’를 내세웠고, 1943년 5월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통리 채필근)을 설립하였다.<sup>27)</sup> 다만, 1940년 이후 장로교의 ‘일본적 기독교화’는 조선총독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일제는 1942년 6월까지 전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여 출국케 하였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장로회총회 제31회 총회(1942년 10월 16일)가 평양 서문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는데 개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 채택하기도 했다.

제31회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평강미주(전필순) 목사의 결의문 낭독에서 “천황의 덕분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 그로 인해 세계 신질서를 완성한 것이 우리 제국의 국시”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총회장이 일제의 필승 기원선언문을 낭독하지 않고 평강미주(전필순) 목사가 낭독한 것은 총회장 최지화 목사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자 일본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한 전필순 목사가 일본어로 낭독했다. 전필순 목사는 일본에서 공부한 후 평양신학교에서 1개월 동안 수업을 한 후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전필순 목사는 “이 가을에 우리 조선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협신 전력으로 성스러운 업적을 완수하도록 매진할 것을 결심한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낭독이 있자 회중들은 “일동은 크게 감격해서 박수”를 쳤다. 이러한 결의문을 선언한 후 개회예배를 드렸다. 개회예배는 직전 총회(제30회) 총회장인 최지화 목사(창씨 개명 철원지화)가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촌승제 씨가 회장 개회 설교를 대독했다. 일본 경찰은 총회진행까지 간섭하여 일본어를 국어라 하고 국어, 즉 일본어로 회의 진행을 강요하여 일본에서 신학을 했던 조촌승제 목사가 총회장을 대신해 성경 본문 마태복음 9:10-17절 말씀으로 ‘신 출발’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대독했다.

이어 회장 철원지화 목사는 제31회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날 총대는 27개 노회 중에 목사 총대 69명, 장로 총대 66명, 합계 135명이었다. 1942년 4월, 조선에 남아 있던 40여 명의 선교사 전원 강제 출국하였으므로 제31회 총회는 선교사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때 총회 소속 노회는 다음과 같다.

25)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182.

26) 이 부분은 「교회법」 제22호를 참고하라. “수교장로회 제31회 총회 고찰 -총회 폐쇄 전, 마지막 총회-”

27) 김승태, “일제 말기 한국 기독교계의 변질·개편과 부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2006), 16-32.,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191.

경성노회, 경기노회, 충청노회, 전북노회, 군산노회, 전남노회, 순천노회, 제주노회, 경남노회, 경동노회, 경안노회, 경북노회, 함남노회, 함중노회, 함북노회, 산서노회, 삼산노회, 의산노회, 용천노회, 평북노회, 평동노회, 안주노회, 평양노회, 평서노회, 황해노회, 황동노회, 화북노회(북경시) (이상 27개 노회)

1942년 제31회 총회는 일제에 의해 폐쇄됐다. 1943년에는 더 이상 총회로 모일 수 없었다. 1912년에 설립된 총회가 1942년 제31회 총회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다.

## 6.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1943년)

장로교는 1940년 9월 제29회 총회에서 중앙상치위원회를 설치한후 11월에 조선총독부에 협력할 내용 및 일본 기독교와 제휴해 “신동아건설에 즉응하는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에 매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41년에는 8월에 ‘일본적 기독교 건설, 구미) 의존 구테 진영의 공제이 담긴 「전시체제신천상병시」등을 발표해 ‘일본적 기를독교 건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그 신천’에 돌입했다. 이어, 1942년 10월 제31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기독교의 일본화’를 내세웠고, 1943년 5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통리 채핀근)을 설립하였다. 1943년 1월 26일과 27일에는 장로교·감리교·성결교·일본기독교조선교구회·구세단 등 모두 5개 교파의 대표 40명이 신문내교회(현 새문안교회)에서 ‘조선기독교합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통폐합된 일본의 ‘일본기독교단’ 산하 ‘일본기

독교조선교단’으로 통폐합을 1943년 4월 15일에 하기로 했지만 실패하였다. 통폐합이 실패하자 교파별로 1943년 5월에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만들에 모든 장로교회를 이에 편입하고 말았다. 1943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폐쇄되었다. 전국 노회 역시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의 산하 교구로 편입되었다. 그해 8월에 감리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시켰다.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규칙 제3조(본 교단의 연혁)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반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회 설립은 명치 초년 내지 및 만주로부터 포교 받은 것을 발단으로 하여 명치 17년 이후 교회는 점차 발전하여 교파 수 20개에 이르렀으며, 그 중 최대 교파는 조선예수교장로회로 교회 수 3,000개, 신도 수 30만 명을 갖고 있다. 소화 16년(1941) 12월 8일 황공하옵게도 대동아 전쟁 선포의 대소환이 발하자 우리들 황국신민은 일역일심, 총력을 기울여, 팔굉위우의 건국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반도 내의 각 교회도 적성을 다하여 하루라도 빨리 완전한 황민화 하는 것을 최대 급선무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선예수교장로회도 그 교의 신학, 성서해석, 교회조직 및 의식습관 등에 있어서 종래의 사상 태도를 깨끗이 청산하여 순 일본적 기독교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하여 그 명칭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이라 칭하리라고 하고 각 지방의 대표가 소화 18년(1943) 5월 5일 경성(서울)에 모여, 새롭게 교단 규칙을 제정하여 직역 봉공, 종교 보국에 매진하는 새로운 발족을 하기로 하다.”

제6조(본 교단의 생활강령)은 다음과 같다.

1. 황국의 도를 따라 신앙에 투철하며 각각의 분을 다하여 신도(臣道)를 실천하며, 황운을 부의하여 받든다.
2. 교의를 받들어 주일을 지키며 공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3. 경신숭조(敬神崇祖)의 국풍을 중히 여기며 경건의 수행을 쌓고 가정을 깨끗이 하여 사회 풍교(風敎)의 개선에 힘쓴다.

조선장로교단은 조선총독부의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3년 8월의 징병제 시행 감사 결의 양양운동주간에는 전국 3,000여 교회에 통첩해 징병제 실시 감사 필승기원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예배는 국민의례, 기도, 징병제 실시 감사, 필승신념 양양결의의 강화, 황국신민서사 제창, 만세봉창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예배 후에 신자들이 국방헌금을 모아 각 교회에, 각 교회가 교구장에게, 교구장이 교단 본부에 내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은 경성교구연맹과 함께 승동교회당에서 사가와(佐川) 통리를 초빙해 징병제 실시 감사 양양대강 180 연회를 개최하였다.<sup>28)</sup>

1943년 5월 당시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은 종래 노회제가 아닌 '교구제'로 갖추어 6월에 공식 신고 등록절차를 마쳤지만, 동년 7월에 평북 노회가 반발해 노회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장로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와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으로 분열되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평북노회는 약 1년 뒤인 1944년 8월에 교단에 복귀하였다.<sup>29)</sup> 이후, 1945년 7월

19일에 다른 교파와 통폐합되어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 되었다.

## 7. 일본기독교조선교단(1945년)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는 '일본적 기독교'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멀리는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제일보가 되었다.<sup>30)</sup> 장로교회는 '일본적 기독교'의 건설을 공식으로 천명하고 그 실천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공식화된 것이 1941년 8월 14일에 발표된 <전시체제 실천 성명서>에서이다.<sup>31)</sup> 1945년 7월 19일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교파 통합되어 단일화된 교단이 조직되었다. 교파 통합은 이미 1942년 1월에 구성된 '교파합동추진위원회' 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sup>32)</sup> 1942년 12월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자가 제1차 합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듬해인 1943년 1월 12일에 장로교·감리교·구세단·성결교와 일본기독교조선교구회·동양선교회·신의교회·기독교회 선선교회·기독교회 기독교오순절교회·기독교회·조선·중교회·조선복음교회·동아기독교회·기독교성주공교·예수교중앙선도원 등 각파 대표의 방청 아래 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sup>33)</sup>

이어, 1943년 1월 26일과 27일에는 장로교·감리교·성결교·일본기독교조선교구회·구

30)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80.

31) 「長老會報」, 1941년 8월 15일.

32)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83.

33) 「基督教(新教)各派의 合同 具体的인 段階에, 昨日, 歷史的인 合同準備委員會」, 『매 일신보』, 1943.1.27.,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198.

28) “必勝祈願의 禮拜”, 『매일신보』, 1943. 8. 6.

29) 김승태, “일제 말기 한국기독교계의 변질·개편과 부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31-34.



세단 등 모두 5개 교파의 대표 40명이 신문내교회(현 새문안교회)에서 ‘조선기독교합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총위원회장은 장로교 목사 김응순(金応詢)으로, 당시 이들은 조선신궁 참배 후 함군 장병 감사 진보 방송과 육·해군 국방헌금 제공 등을 결정하고, 각 교파를 통일하되 당분간 2부제를 취해 조선개신교 교파들을 제1부, ‘일본기독교단 조선교구회’를 제2부로 하며, 일본기독교단에 준해 장치 설립된 조선기독교단의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후 ‘일본적 기독교’를 수립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성명서는 1943년(소화 18) 1월 27일에 발표하였으며, “合同의 大綱을 決定, 朝鮮基督教合同準備委員會 第二日, 声名書”라는 제목의 성명서였다. 그 내용은 “빛나는 昭和維新의 大業이 大東亞地域에 拔大되고 있는 이때 … 기독교 제파(派)는 종래 파별적 대립의 형체(型體)를 버리고 구미적(米的) 색채의 일체를 불식(私)하고 새로운 일본적 기독교(日本的 基督教)를 수립”해 일본에 봉사한다는 것이었다.<sup>34)</sup> 이 성명서는 “조선야소교장로회, 기독교조선감리교회, 조선성결교회, 조선구세단, 일본기독교단 조선교구회 합동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1943년 2월에 제1차 합동준비위원회는 일본에서 1941년에 조직된 ‘일본기독교단’의 규칙에 따라 합동의 대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부안을 작성해 3월의 제2차 합동준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제3차 합동준비위원회를 거쳐 4월 15일까지 합동 기독교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감리교단 측이 미리 세부안을 검토해 12개 조의 혁신안을 제출하고 합동준

비위원회가 이 가운데 5개 조항을 수정하지만, 감리교 측 대표 스모가와(李河東旭, 이동욱) 외 8명이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합동준비위원회는 17일에 특별위원 10명을 선출해 교섭을 벌였지만, 감리교단 측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교단 합동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sup>35)</sup>

합동준비위원회가 1943년 4월 15일에 통폐합하는 합동이 실패자가 1943년 5월에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조직하였다. 그해 8월에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이 조직되어 각 교파 차원에서 일본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1945년 봄에 오사카 한인교회 전인선(全仁善) 목사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의 초청을 받아 수개월 동안 조선교회 상황을 조사하면서 1943년의 교과 합동 실패에 주목해 ‘일본교단’ 선례에 따른 ‘조선연합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무총감은 1945년 6월 25일 조선총독부 관계자들과 장로교 감리교·구세군 가톨릭·성공회·일본교회 지도자 회합에서 ‘조선교단’의 결성을 제안했고, 각 교파대표들이 수용하면서 당일 저녁부터 정무총감의 주재 아래 연합 준비위원회(20명 장로교 9명, 감리교 7명, 구세군 2명, 학부국 측 2명)를 구성하였다. 이어, 다음 날부터 교회 규칙을 제정하면서 총회 일자를 확정하고 대의원(장로교 27명, 감리교 21명, 구세단 6명, 참여 희망 군소교단 각 1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945년 7월 19, 20일에 장로교·감리교·구세단과 5개 교단이 참여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과 규칙과 공식 명칭(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결정하고, 장로교·감리교·

34) 『매일신보』, 1943. 1. 28.,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199. 주) 203 참조.

35)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199-200.

구세단 대표자들의 직위 사임과 교파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 조선 교단은 본부를 피어선기념 성서학원에 설치하고, 향후 지역별 교구장과 임원단을 동년 8월 1일부로 임명하고, 8월 31일까지 각 교파 본부 재정을, 12월 31일까지 각 교파의 모든 재산을 양도받는 계획을 수립하였다.<sup>36)</sup>

결국 1945년 7월 19일과 20일에 장로교 및 감리교의 양 교단과 구세군 등 대의원 59명과 총독부 학무국 대표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모든 교단이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발족시켰으며, 일본 내 단일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에 소속됨으로써 교단 전체를 일제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중앙 조직은 양대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통리와 부통리를 각각 맡고, 지방 조직 각기 다른 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 두 명이 교구장의 책임을 함께 맡는 식으로 조직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해방 전까지 1달여 동안 존재하였을 뿐이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 히로히토가 일본방송협회(現 NHK) 라디오로 항복선언을 하여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조선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이 되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폐쇄되었다. 그해 10월 11월에 전국적으로 각 교구는 다시 노회를 복구하고 교회를 재건하였다. 1942년 제3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까지 회록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방의 해인 1945년까지 역사적인 사료들이 인멸되었다. 특히 경기노회는 1940년부터 1951년까지 모든 회의록이 인멸되어 사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 기간 교회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 결론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더불어 교회 역시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었다.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장악하는 일은 조선의 중요한 신앙과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일제의 종교 인식, 관련 법규, 종교정책을 통해 '일본형 종교 개념의 확산과 정책적 목표 실현을 위한 활용'이었다.<sup>37)</sup> 기독교의 성경적인 신개념과 신앙을 천황제로 변용하여 기독교(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훼손하였다. 종교적인 신앙을 일본화를 위해 이용하였다.

일제는 「포교규칙」(1915년)과 「종교단체법」(1939년)에 근거하여 「일본기독교단」(1941년)으로 일본의 기독교를 통폐합한 일제는 이에 근거하여 조선의 「조선예수교장로회 31회 총회」 폐쇄(1943년)를 폐쇄하고 대신 「일본기독교단」 산하에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1943년)을 설립하여 조선의 모든 장로교회를 통폐합하여 일본화된 기독교를 유지해 갔다. 이어 「일본기독교조선교단」(1945년)을 만들어 조선의 모든 기독교를 통폐합하여 기독교의 정체성을 허물고 일본화를 이루어갔다. 이는 교파 통합으로 단일 교단의 연합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전혀 없었다. 초기 선교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 장로교회의 직제, 치리회 제도를 모두 말살하여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 내지 훼손하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중단케 하는 해방은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었다. 이러한 암울한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6)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199-200.

37)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454.

## 조직교회-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권 자동 부여 법리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조직교회 임기 1년의 시무목사는 공동의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당회장권이 주어진다. 미조직교회 역시 지교회 시무목사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당회장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에 대해서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여 시무청빙 허락시 당회장권이 배제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를 과도하게 감독하려는 것으로 전국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들에 대한 자괴감을 갖게 하는 시무권에 당회장권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헌법 IV. 정치 총론 제5항).

지교회(개별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받은 목사(IV. 정치 제21장 제1조 제5항)를 노회가 승인하여 지교회에 파송한다.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을 대표한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IV. 정치 제9장 제1조) 지교회를 치리

하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한다(IV. 정치 제4장 제4조 1항, 2항). 그러나 아직 장로가 없어서 당회가 조직되지 않는 교회를 미조직교회 한다.

### 조직교회 위임목사

조직교회에서 담임하는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만 70세까지 지교회를 시무한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으로 위임목사가 됩니다. 위임목사(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IV. 정치 제9장 제3조).

위임 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IV. 정치 제4장 제4조 1항).

### 조직교회 시무목사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1년 임기의 ‘시무목사’로 청빙을 하여 노회가 승인할 때 ‘시무목사’가 된다. 이때 시무목사 직에는 당회장권이 포함한다.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시무권에 당회장권이 포함된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2항).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는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가 승인할 때 지교회에 임기 3년의 ‘시무목사’가 된다(Ⅳ. 정치 제4장 제4조 2항, 단서 조항). 조직교회 시무 목사처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역시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 승인으로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지교회 담임하게 한다.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담임하는 시무목사를 청빙할 때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별하지 않고 시무목사직 안에 당회장을 포함하여 청빙하며, 노회를 이를 승인한다.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조직교회의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소집한다(Ⅳ. 정치 제21장 제1조 2항).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부존재하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당회가 아닌 시무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한다. 당회장권은 시무목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진다.

시무목사로 청빙과 노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당회장권이 주어진 시무목사가 된다.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기가 1년인 반면,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기는 3년이다. 3년 임기가 종료되면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3년 동안 더 시무할 수 있다. 임기가 종료된 본인이 청원한 것이 아니라 대리 당회장이 청원하여 노회 승인을 받는다.

###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은 분리되는가?

앞서 살펴본 대로 조직교회 ‘시무목사’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히 지교회 공동의회 청빙결의와 노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청빙과 승인은 지교회 시무권과 당회장권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동되어 있다.

조직교회의 공동의회는 위임목사나 시무목사가 당회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한다. 대표자의 소집권은 사전에 당회 결의를 요한다. 임기 1년의 시무목사에게 자동으로 당회장 직무가 주어진다. 이 당회장은 임기 1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결의를 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회가 시무목사로 청빙을 승인할



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대표자가 되게 하며, 시무목사가 공동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한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 162개 노회가 있는데 대부분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청빙과 승인 과정에서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지 않고 시무목사로 승인할 때 당회장권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하는 시무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당회장권 없는) 시무목사로 청빙한 것은 아니다.

####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부여한 당회장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편 1장-12장까지 상편(실체법),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하편(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체법에 의한 절차법으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제 12 조 시무 목사 권한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यो,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यो,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IV. 정치 제15장 제1조).

위 규정에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기 3년이 종료되고 계속 시무 연장을 받기 위해 노회에 청원하여 3년 시무직(당회장권 포함)을 연장받

아야 한다. 이때 노회 결의로 시무권(당회장권)을 허락하였을 때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분리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시무권만을 허락했다고 해석하여 별도로 임시당회장을 선임한 것은 교단헌법에 반한다.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결의를 하였다면, 여기에 당회장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무목사로 청빙을 받았다면 임기 3년의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 ※ 참조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63198 판결 참조

#### 교인총회 소집권한에 관하여

① 교단헌법 정치편 제4장 제4조 제2항에서는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고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미조직 교회에서 임시목사<sup>38)</sup>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2조 제1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यो 노회 결의로 당회장

38)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는 시무목사로 교단헌법이 변경되었으며, 임기 1년은 3년으로 변경되었다.

권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1년간의 임시목사 시무 기간이 만료한 경우 비록 지교회 공동의회의 가결이 없더라도 노회의 승낙으로 임시목사로서의 시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교회는 장로가 없어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미조직교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교회가 소속되었던 D노회는 2012. 12. 18. 피고 C이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2014. 6. 30. 피고 C이 2007. 12. 20.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목회경력 증명서'를 각 발급하였다. 또한 D노회는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노회회의록에 피고 C을 무임목사(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나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는 목사를 일컫는다)와 구분하여 피고 교회의 '임시목사' 또는 '시무목사'로 기재하였고, 2012. 4. 9. 및 2012. 4. 10.에는 피고 교회에서 D노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바, D노회는 피고 C이 피고 교회의 시무를 담당하는 목사임을 계속적으로 승낙하여 시무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피고 C은 2002. 11.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의 'E선교회'를 설립하였고, 이어 2004. 2.경 피고 교회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교회에서 시무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 교회의 교인

들은 피고 C의 피고교회 내 직분 및 역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공동의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교단 헌법 제21장 제1조 제2항은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조직 교회이므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 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데다가, 교단 헌법 제9장 제3조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시무를 담당해 온 피고 C에게 이 사건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중 이 사건 각 정관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원고 등의 교인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교회에 대한 원고 등의 교인지위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교단탈퇴,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적용하는 법리 고찰

광주시민교회 중심으로(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1심과 2심에서 교단 탈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제2민사부(재판장 양양의 판사는 6월 29일 광주시민교회 교단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 사실관계

광주시민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나 한

장로가 원로로 하여 “교단탈퇴결의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본다.

○ 당사자의 지위 등 : 피고는 1971년 설립된 교회로서 2020년 무렵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교단’ 동광주노회(이하 ‘동광주노회’라고 한다) 소속이었다. 당시 피고의 담임목사는 신○○였고, 그 무렵 세례교인은 약 335명이었다. 원고인 박성구 장로는 파고 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장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신○○목사에 대한 1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 : 시민교회 장로 4명은 2020. 4. 22. 동광주노회에 신○○의 ‘피고 정관 불법 개정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청원하였다. 이에 소속 노회인 동광주노회는 불법 정관개정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본회에 보고하기를 ① 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국 구성, ② 신○○에 대한 재판의 귀결 시까지 신○○의 피고 담임목사(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청원하였다.

이에 신○○는 2020. 6. 1. 동광주노회에 시민교회가 2020. 5. 31.부터 동광주노회의 행정과 지시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동광주노회는 2020. 6. 5. 제 120회 1차 임시회의에서 ‘신○○에 대한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신○○의 담임목사(당회장)로

서의 직무(설교, 심방, 회의 소집, 행정 등 모두 목사 직무를 정지한다' 라는 결의를 하였다.

신○○와 신○○측 교인들이 2020. 6. 11. 본관 건물에 진입하여 위 날부터 본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본관의 출입문에 빗장을 걸고 쇠시슬과 밧줄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폐쇄하고 원고 측 교인들이 본관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원고 측 교인들은 그 무렵부터 별관 건물을 사용하였다. 이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들과 신○○측 교인들은 별도로 예배를 하였다.

동광주노회 재판국은 2020. 6. 16. 신○○를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이하 '1차 면직판결' 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동광주노회는 같은 날 제120회 2차 임시회의에서 동광주노회의 노회장인 안현식을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신○○는 동광주노회 1차 면직판결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소하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2020. 7. 16. 신○○의 동광주노회 탈퇴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소장을 기각하였다. 탈퇴한 자는 상소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 1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의 무효 등 : 동광주노회로부터 시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안현식 목사는 소집에 따라 시민교회 당회(2020. 6. 20. 및 2020. 6. 25)를 개최하였다. 이 당회에서 시민교회의 정관개정 안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가 집합 공동의회(2020. 6. 28.)에서 시민교회 정관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그러나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 반대 측인 교인 구○○은 시민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2020. 6. 28. 자 공동의회의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0카합123)을 하였다(2020. 7. 9). 위 법원은 "피고가 2020. 6. 28. 공동의회에서 한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2020. 10. 2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정관 제22조 제3항("본 교회 소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는 여전히 피고의 담임목사로서 피고의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신○○가 피고의 담임목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광주노회가 2020. 6. 16. 파송결의로 안현식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안현식이 피고의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현식의 소집에 의하여 2020. 6. 20. 자 및 2020. 6. 25. 자 각 당회 결의와 그에 따라 안현식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2020. 6. 28. 자 공동의회의 정관변경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신○○반대 측, 즉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 측 원고 등은 신○○목사를 상대로 동광주노회에서 1차 면직판결의 효력을 전제로 신○○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487)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020.



10. 2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차 면직판결에 관하여 동광주노회는 신○○에게 2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신○○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1차 면직판결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 동광주노회 탈퇴 및 강서노회 가입 결의 등 : 동광주노회 소속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의 반대 측인 교인 구○○등 피고의 교인 147명은 신○○에게 임시 교인총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2020. 6. 30), 신○○는 구○○에게 ‘임시 교인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나, 장로 6명 중 4명(박성구, 조형수, 송희용, 노승백)이 일부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시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2020. 7. 2).

신○○목사는 신○○를 따르는 교인들과 예배를 하였고(2020. 7. 5), 당시 신○○또는 구○○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을 구두로 광고하였다(2020. 7. 12). 이에 피고는 임시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라고 한다)를 개최(2020. 7. 12)하여(재적 331명 중 참석 169명) ‘동광주노회 탈퇴’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라고 한다) 가입’을 결의하였다(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6명,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리고 동광주노회에 신○○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한 장로 4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결의하

였다.

○ 강서노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등 처분 : 교단을 탈퇴한 후 피고의 교인 3인은 원고를 피고의 당회에 고발하였고(2020. 10. 27), 강서노회 재판국은 원고 등 교인 92명에 대하여 제명 및 출교 처분을 하였다(2020. 11. 2.).

○ 동광주노회의 신○○에 대한 2차 면직판결 등 : 한편 동광주노회는 제120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신○○의 노회 탈퇴 등으로 인한 신○○에 대한 재판국 설치 및 신○○에 대한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다(2020. 11. 13).

동광주노회는 신○○에게 신○○의 담임목사(당회장)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설교, 심방, 회의소집, 행정 등 일체의 목사 직무), 기존에 파송한 안현식의 당회장권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하였고(2020. 11. 23), 제120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2020. 12. 4) 피고의 임시당회장이 안현식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동광주노회는 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차로 목사직 면직판결(이하 ‘2차 면직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020. 12. 21).

“① 2020. 5. 31. 자동차 안에서 송덕섭, 조상권 장로와 함께 의사정족수 미달인 상태로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송희용, 조형수, 노승백 장로를 면직, 제명, 출교하였고, ② 같은 날 성도들에게 불법적으로 동광주노회에 행정보류 및 탈퇴, 강서노회 가입을 통지하였으며, ③ 2020. 6. 7.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회집함으로써 공예배를 분리하고, ④ 2020. 6. 14.에는 원고 측 교인들의 예배

당 출입을 막고 교회를 분리하였고, ⑤ 2020. 6. 11. 10시경부터 용역을 동원하여 예배당을 강제 점거하고 2020. 10. 4.까지 용역들을 시켜 위 원 고 측 성도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다수 성도들에 대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 강서노회의 신○○에 대한 면직판결 등 : 피고의 집사 김치곤 등 교인 11명은 강서노회에 신○○를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실로 면직, 출교처분 등의 권징재판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2021. 1. 21).

강서노회는 신○○에게 위 고소에 대한 의견서 및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2021. 2. 14)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다. 신○○는 피고의 공동의회를 개최(2021. 2. 28)하였고, 위 공동의회에서 강서노회의 탈퇴 및 전남노회에 가입하는 결의(재적 202명 중 참석 110명, 찬성 110명),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재적 202명 중 참석 110명, 찬성 109명, 기권 1명)가 이루어졌다. 강서노회는 신○○에 대하여 권징재판의 귀결 시까지 피고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최○○을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2021. 3. 2). 강서노회는 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면직판결을 하였다(2021. 3. 18).

피고의 교인 김치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21. 2. 28. 자 공동의회에서 한 강서노회 탈퇴결의 및 정관개정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1 카합53)을 하였는데(2021. 3. 18), 위 법원은 2021. 6. 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의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결의 등 :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인 128명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시민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 신○○목사의 대표권 상실에 관한 찬반 결의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광주지방법원 2020비합5049)를 받았다(2021. 6. 3). 이는 동광주노회의 신○○에 대한 2차 면직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강서노회 측 최○○은 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1카합54)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강서노회의 2021. 3. 18. 자 면직판결에 의하여 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21. 6. 11).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인 128명은 법원의 위 소집허가에 따른 임시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22조 제3항에 근거한 ‘신○○의 대표권 상실’ 결의를 하고(재적 254명 중 158명(위임장 75명 포함) 출석, ① 교회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 ② 목사 사택은 교회 소유임에도 신○○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③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4,500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후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 공금 4,500만 원을 지출 전원 찬성], ‘안현식이 광주시민교회의 대

표자임'을 선언하였다(다만 후자는 법원의 임시 교인총회 소집허가결정에서 허가한 안건이 아니다).

안현식은 임시당회장으로서 2021. 6. 20. '공동의회를 2021. 6. 27. 개최할 것'을 광고 및 공고하였고, 2021. 6. 27.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결의(이하 '2021. 6. 27. 자 소속결의'라고 한다), '피고의 대표자가 안현식임을 확인'하는 결의 [각 재적 254명 중 169명(위임장 85명 포함) 출석, 168명 찬성]를 하였다.

○ 피고의 정관 : 피고의 정관은 2012. 12. 30. 제정되었고, 2018. 1. 28. 개정되었다(이 판결에서 '변경 전 정관' 또는 '정관'이라고 할 때는 이를 가리킨다). 또한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신○○에 의하여 개최된 피고의 공동의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1심의 판결은 “피고의 2020. 7. 20.자 교단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였다. 시민교회 정관에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제22조 제3항)라는 조항이 있다. 이 정관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는 여전히 피고의 담임목사로서 피고의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목사는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할 수 있는 소집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관이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을 때 지교회 공동의회 소집권이 박탈된다. 소집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시민교회 담임목사는 정관에 따라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지교회 담임목사직은 유지되며 그 권한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결의를 하였다.

신○○목사는 신○○를 따르는 교인들과 예배를 하였고(2020. 7. 5), 당시 신○○또는 구○○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을 구두로 광고하였다(2020. 7. 12). 이에 피고는 임시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라고 한다)를 개최(2020. 7. 12)하여(재적 331명 중 참석 169명) '동광주노회 탈퇴'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라고 한다) 가입'을 결의하였다(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6명,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리고 동광주노회에 신○○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한 장로 4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대한 유무효 소송에서 1심에서 “교단탈퇴 무효”되었고, 2심에서는 1심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시민교회는 교단탈퇴가 무효되었으므로 여전히 종전 동광주노회 소속이 되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합동) 소속이 아니라 타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

소속이 되었을 것이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단 탈퇴는 무효라고 보았다.

첫째 재판부는 교단탈퇴와 정관, 민법 제42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렇다면, 피고 교인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단탈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1심의 오해한 이 부분은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바르게 잡아 판단하였다. 1심이 오해한 것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에 대한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교회의 교단탈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서 전단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이지만, 후단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총 사원의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정관으로 달

리 규정할 수 있다. 이 후단 규정에 의해 시민교회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④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본 규정에서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출석회원이 아닌 전 의결권자, 즉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1심은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에 미달되며, “본회 회원의 과반수”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는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단은 재판부가 잘못 판단하였다. 후술한 것처럼 2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았다.

둘째, 1심 재판부는 교단탈퇴가 무효인 이유로, 신○○목사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회를 소집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당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시 교인총회 소집을 청원한 교인들은 민법 제70조에 정한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 거쳐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신○○는 이처럼 적법한 절차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셋째, 사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인정 여부에 대해 “교회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교인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그들이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신○○와 신○○측 교인들은 2020. 6. 11.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과 별도로 예배를 해왔고, 2020. 7. 5.에도 별도로 예배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상대로만 구두로 광고를 하였다.”라고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가 하자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측 교인이 신○○측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 대한 광고를 듣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원고 측 교인들도 사실은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개최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동광주노회 소속이었고, 최소한 이 사건 결의 이전에는 동광주노회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 측 교인도 피고의 교인인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 측 교인에게도 그들이 사용하던 별관 건물에 공고를 하거나 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신○○는 2020. 6. 28.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때는 교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사실도 있다”라고 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 교인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교인이 이를 알

았다고 하더라도 그 교인이나 임시교인총회에 대하여 알지 못한 교인에게 위 임시교인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넷째,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 인정 여부이다. “2020. 7. 5. 예배 당시 신○○가 아닌 구○○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교인총회를 위한 광고를 반드시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소집권자의 위임에 따라 제3자가 그 소집을 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위 예배는 신○○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은 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섯째, 원고 측 “교인에 대한 예배당 출입 방해 하자 인정 여부이다.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제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영상에 의하면 교인들의 본관 예배당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여섯째, 결의방법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 교인

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사람이 투표하였다거나 중복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찬반의 집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위 첫 번째(정족수 문제), 두 번째(공동의회 사전 당회 결의 문제), 세 번째(소집통지 하자) 등으로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넷째(소집통지자 권한), 다섯째(출입방해 문제), 다섯째(결의방법 문제)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미달한 하자,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원고 측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다. 이는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2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2023나 20043 판결)

2심은 1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미달한 하자”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1심 판결의 하자를 보완하여 보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

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166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163명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관 제18조 제5항이 정한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교단탈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정관변경”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의 판단으로 출석 회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할 경우 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⑤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⑥ 공동의회 의장(담임목사) 또는 적법한 수임인에게 제출하는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교단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를 적용한다. 이는 대법

원이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은 정관변경 정족수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과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이 상호 충돌되게 규정되어 있을 때 교단탈퇴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시민교회는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은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단탈퇴는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교단탈퇴 정족수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란 재적회원 과반수를 의미한바,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163명이 아닌 166명으로 의결정족수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는 무효이며, 그 이유는 ▲의결정족수 본회 회원 과반수 찬성 미달한 하자 ▲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 원고 측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는 무효이며, 여전히 광주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판단한 판결로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할 지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심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교단을 탈리하여도 피고 재산은 여전히 피고 교인들의 공유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피고 교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회

운영 규범에도 변화가 없어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통해 단체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변경하거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교인의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결론

이번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인의 소’는 본 교단에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회 정관과 교단과의 관계,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 즉 소집권자, 소집공고, 회의목적 사전 통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하자 등이다. 그리고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과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법리적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교훈은 본 교단이 음미해야 할 법리라 생각된다.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 무효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양영희 판사)는 29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민교회는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은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단탈퇴는 재적회원 331명 중 169명(위임장 98명 포함)이 출석하여 163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교단탈퇴 정족수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란 재적회원 과반수를 의미한바,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163명이 아닌 166명으로 의결정족수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교단탈퇴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판단했다. 1심 인용 부분은 ▲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원고 측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광주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판단한 판결로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할지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교회법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교회법을 알아야

소재열 박사 지음, 신국판 양장 1,300면 정가 60,000원



##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소재열 목사 지음, 신국판 브엘북스



소재열 목사 지음,  
신국판 브엘북스, 정가 13,000원  
기업은행 657 020624 04 018  
(한국교회법연구소)

문의 : (031) 984-9134

교회법이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하여 유형교회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활 규범을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법은 악한 것이 아니며,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다.

교회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국가법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 이유는 교회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치외법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주님은 무제한과 무절제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한 어떤 울타리(한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했다. 교회법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수단으로 선하게 사용한다면 교회법 역시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할 수 있다.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더 많은 교회법과 국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에 의지해서 교회법과 국가 각종 법령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본서를 정독할 경우, 교회와 관련한 법적 지식은 목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직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겪는 법리적인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 목 차

용어 해설 \_ 5

### 제1장 교회법과 종교적 배타주의-포용주의 \_

11

교회와 교회법 / 규범으로서 법 / 종교적 배타주의와 포용주의 / 복수의 보복주의. 교회법의 왜곡된 인식과 무관심이 문제이며, 교회의 배타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교회의 정체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2장 법이 필요한 유형교회 \_ 21

교회 표지와 교회론 / 칼빈의 무형교회론 강조 / 칼빈의 무형·유형교회론 강조 / 칼빈의 유형·무형교회론 강조 / 분쟁교회의 교회론 이해 / 교회 구성원의 독특한 신분 / 교회 사냥꾼  
가시적인 유형교회는 교회법이 필요하며, 교회법은 교회 구성원의 신분과 지위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 제3장 세상 법정 앞에 선 고린도교회 \_ 31

1.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송 문제에 관해 질문한다(1-7). / 세상 법정으로 가야 하는가? /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 불신자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 차라리 송사하지 않고 손해를 볼 수 없는가? / 2. 너희는 불의를 하지만, 저는 너의 형제로다(8절) / 3.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의 목록(9-10) / 죄악 목록 / 유업 받지 못할 죄악들 / 바울의 강조점 / 4. 교

훈과 묵상. 고린도 교회 분쟁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 소송으로 대응하여 교회 정체성을 훼손했다.

### 제4장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리 \_ 45

의결권자(재적 교인) 확정/ 소집 절차 / 회의 목적 사전 공지 의무 /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특별한 규정의 정족수 / 표결 방법 / 회의록. 지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운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에 대한 법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제5장 한국교회에 적용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 관계 \_ 56

I. 서론 / II.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와 적용법규 /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 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따른 적용법규 / 3.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권 / III.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의 분쟁과 재산귀속 /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 2. 교회 교인의 지위 취득 및 상실 / 3. 교회의 재산 공시문제 / 4. 판례로 본 교회분쟁시 재산귀속관 / IV. 비법인 사단인 교회 자치법규(정관) / 1. 지교회(개별교회)와 교단의 관계 / 2.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의 관계 / V. 결론.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의 단체법적 성격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회 운영의 초석이 된다.

### 제6장 자치법규(정관) 지교회 구속력 \_ 85

정관의 법적 성격 / 교회 정관의 필요성 / 정



## 교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교회는 국가법의 관련 속에서 운영해야

공동의회 적법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부동산 취득과 처분  
교회 합병, 정관변경, 교단탈퇴, 법원허가로 공동의회 소집  
교회 대표자 지위, 교단과의 관계, 교회 채무 책임, 실명제

지난 20년 동안 교회 분쟁현장과 법원 소송으로 인한 판례법리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법원 소송으로 인한 자료와 판례법리를 본서로  
확인하여 그대로 교회를 운영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변경 의결정족수와 공동의회 전권사항 / 정관  
변경 법리 /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과 공동의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 정관 없이 운영 중  
정관을 만들 때, 제정인가, 변경인가? / 정관변  
경 효력 시점과 불법 조항

### 제7장 교단 헌법과 교회의 관계 \_ 104

교단과 교회는 사법상 계약관계 / 교회의 배  
타적 권리 /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과 충돌 때  
우선성 / 교회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 충돌 때  
우선성. 교단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하며, 교인들에 의해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일이나 내용은 교인들의 고유  
권한이다.

### 제8장 담임목사인 대표자의 법적 지위 \_ 113

법적 분쟁 사례 / 소송의 대상 여부 / 교단 헌  
법에 반한 총회의 준목 고시 면제 결의는 무효 /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 대  
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고법의 판결 / 오정현  
목사 재 위임식 / 교회 대표자의 중요성 / 교회  
대표자 지위의 소송대상 여부 / 권징재판의 무  
효사유 / 대표자 지위 상실 / 면직효력 정지, 대  
표권 유지 / 대표자 지위의 중요성 / 교회 분쟁  
시 교인 지위 / 교인 지위 상실인 교회 탈퇴 여  
부 / 분리 예배가 교인지위 문제 / 노회 소속 여  
부 결정은 교회 권한 / 교인, 교회 건물 사용 권  
한 / 대법원 두 판례 쟁점

### 제9장 교단 헌법 해석과 명성교회 \_ 135

문제의 쟁점 / 교단 헌법 위반 여부 판단자는  
누구인가? / 헌법 해석의 권한 / 교단 헌법을 위

반했다고 주장한 자들의 헌법 위반 / 명성교회 교단 헌법 위반 근거 제시할 수 있는가? / 기초 사실 / 1심과 2심에서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 /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명성교회 패소 / 2심(서울고등법원) 명성교회 승소 /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 규정의 개정 제안 / 세습이라는 엉뚱한 주장. 지교회의 교단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선동하는 개인이 아니라 총회이며, 자의적으로 불법이라 확정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면 안 된다. 이는 시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10장 교인지위 취득과 상실 법리 \_ 163

책임 있는 교회 교인은 세례받은 자 / 교인이며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자 / 교인 지위 득실(취득과 상실). 교인지위가 취득되면 교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며,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권이 주어진다. 교인 지위 취득과 상실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제11장 교회의 교단 가입과 탈퇴 법리 \_ 169

가입과 탈퇴 개념 / 지교회의 교단 탈퇴 법리 / 교단 탈퇴 정족수가 문제된 사례

교회가 특정 교단 가입과 탈퇴는 교회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가입은 교단과 교회의 합의가 필요나 탈퇴는 교단과 합의가 필요치 않다.

### 제12장 교회와 노회 분열 불인정 법리 \_ 177

교회 분쟁에서 분열 불인정 / 노회 분쟁과 분열. 교회 분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어느 측으로 유지되고 있는냐가 관건이다.

### 제13장 교회, 노회 합병 법리 \_ 183

합병 무효를 예견한 교회의 사례 / 합병 법리 / 합병을 위한 특별한 이유 / 무효행위의 추인결의. 교회와 노회 합병은 교단 탈퇴 정족수보다 더 엄격하다. 이는 합병은 해산을 전제하며,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귀속 문제가 제기된다.

### 제14장 교회의 재산법(부동산 등기) \_ 193

교회 재산의 성격 / 교회 재정과 재산의 법적 성격 / 교회 재산은 총유 / 재산처분 방법, 교회 정관 / 정관에 처분 규정이 없다면 총회 결의 필요 / 재단법인으로 부동산 등기관리 / 교단 유지 재단으로 등기관리하는 교회 / 명의신탁 금지사항 위반 / 법원, 공동의회 소집 허가 / 공동의회 소집권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이며, 관리나 처분, 취득은 공동의회 결의나 정관에 따르지 아니하면 불법행위로 책임이 따른다.

### 제15장 법원, 공동의회 소집허가 \_ 210

법원허가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 법원이 임명한 소집자의 권한 / 교인들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정관 정비 / 공동의회 소집 청원 대응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 중요한 결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소집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결의가 된다.

###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세미나 강의 및 상담을 받습니다.

(010-3348-1636)



# 행복누림과 영혼남음이 行傳으로 동탄(화성) 민족 열방을 福音化 주다산교회



—  
개혁주의에 근거한  
예수 스파크셀로  
변화(Change)와  
도전(Challenge)을  
경험하는 교회  
—

스파크셀이란?

- S** Scriptures(성경 중심)
- P** Prayer(기도의 경건 중심)
- A** Action(전도의 삶 중심)
- R** Revival(부흥 중심)
- K** Kingdom of GOD(하나님 나라 중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다산교회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60번지(10동사로 532) 동탄종교부지  
TEL 031-8015-1091~3 / FAX 031-8015-1094

담임목사 권순용  
부목사 박주안 윤철관 이석 신현호 장요셉  
강도사 이봉현 조요섭  
전임전도사 강희남 조동순 신영숙 고현주 김형자  
권홍순  
협동목사 오승남 노정수  
시무장로 이길섭 최순식 최창원 전영재 송재영 안원석  
윤퇴장로 김재복  
협동장로 유인달 정남근 유병국 이훈구 정창균  
황보병태 이경옥

담임목사 권순용

주다산교회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 서기 역임  
총회다음세대운동본부장  
조선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 양곡제일교회

경기도 김포시 양곡2로80번길 30

TEL : 031-981-5767 FAX : 031-984-5268



담임목사 임재호



1.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2.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섬김" 공동체
3.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훈련" 공동체
4.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 공동체
5.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가정" 공동체

Worship  
Sharing  
Training  
Evangelism  
Family





New Again.  
New Blessing

# 사랑하며 섬기는 새에덴교회

다시 **본질로!**  
Back to **Essence** Again!

다시 **생명으로!**  
Back to **Life** Again!

다시 **사명으로!**  
Back to **Mission** Again!



담임목사 소강석

“새에덴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도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대표적인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마틴루터킹 국제 평화상을 수상하고 한국 목회자 최초로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록에 등재되었으며,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목회자요, 현대적 지성과 예술적 감성, 광야의 영성을 겸비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교회 생태계와 건강한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에덴교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TEL 031-896-1000 [www.saeeden.kr](http://www.saeeden.kr)

